

www.mospa.go.kr

희망의 새길

장애인동료와 함께 일하기



안전행정부



발간사

적지 않은 장애인이 우리 주변에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고, 불의의 사고 등으로 누구나 장애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에도 비장애인들 중 상당수의 사람들은 장애는 나와 관계없는 남의 일로 치부하거나, 장애인에 대해 거리감을 두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과 우려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필수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장애인의 실질적 사회참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내에는 18,700여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우리의 동료로 근무하고 있으며, 매년 국가직 7·9급 공채시험에서 선발인원의 6%를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채용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적지 않은 수의 장애인 공무원이 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배려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를 발간하게 되었으며, 이 작은 책자가 공직 내의 장애인식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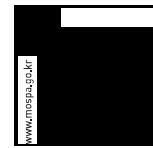


일러두기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는 장애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제작된 교재입니다.

이 책은 비장애인 공무원들이 장애인 공무원들과 함께 근무하게 될 때 도움을 드리고자 장애에 대한 상식, 장애인 공무원 근무 사례, 장애인 관련 국가 정책 위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 Contents



- I ▶ 07 **퀴즈! 퀴즈!**
당신은 장애인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나요?
- II ▶ 11 **장애인 공무원 근무사례**
- III ▶ 15 **장애인 동료와 함께 하기**
 - 1. 장애유형 알아보기
 - 2. 장애유형별 특성 이해하기
 - 3. 장애인과 함께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
 - 4. 바른 표현 알아보기
- IV ▶ 29 **장애인 차별금지 정책 및 사례 알아보기**
 - 1. 장애인 차별금지 정책
 - 2.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당한 편의의 기준
 - 3.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V ▶ 37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정책**

● ● 장애를 가진 위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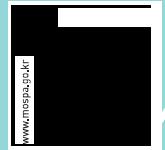
세종대왕

(1397~1450)

조선 4대 임금 / 시각장애인

세종의 업적 중 으뜸으로 손꼽히는 치적은 훈민정음 창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세종에 대한 이야기 중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그가 시각장애인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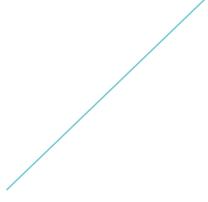
조선왕조실록 등에도 그가 안질 치료를 위해 온천 등에 행차하였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서 보인다. 그가 1450년 54세에 세상을 떠난 것을 고려하면, 훈민정음을 창제한 1443년과 반포한 1446년은 그의 말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의 안질이 가장 심했던 시기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셈이다.



퀴즈! 퀴즈!

당신은 장애인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나요?





퀴즈! 퀴즈!

당신은 장애인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나요?



① 대부분의 장애인은 선천적 장애인이다. ()

- ① ○ ② X

② 지체장애인이 넘어졌을 때 얼른 일으켜 주어야 한다. ()

- ① ○ ② X

③ 뇌병변 장애인은 지능도 비장애인보다 낮을 것이다. ()

- ① ○ ② X

④ 청각장애인과는 수화로만 대화가 가능하다. ()

- ① ○ ② X

⑤ 훨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출장이 잦은 일은 할 수 없다. ()

- ① ○ ② X

⑥ 지적장애인은 지능이 낮아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

- ① ○ ② X

⑦ 언어장애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때 대충 짐작으로 알아들은 척 하는 것이 좋다. ()

- ① ○ ② X

⑧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지칭하는 바른 용어는 '정상인'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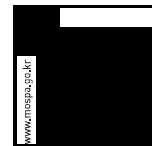
- ① ○ ② X

⑨ 장애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

- ① ○ ② X

II. 퀴즈! 퀴즈!





○○ 나는 어디에 속할까요?

※정답인 경우 1점으로 계산합니다.

| | | |
|--|---------|--|
| | 7점 이상 |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으시군요.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변 사람들과도 생각을 나누세요. |
| | 4점 ~ 6점 |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장애인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
| | 3점 이하 | 장애인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이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



▶ 정답 및 해설

① 정답 : ② X

▶ **해설 :** 장애인 중 사고나 질환 등으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인이 94%를 넘습니다.
즉, 장애는 일부 소수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② 정답 : ② X

▶ **해설 :** 장애인이 넘어졌을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 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혼자 일어서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③ 정답 : ② X

▶ **해설 :** 뇌병변 장애인은 뇌의 일부분이 손상되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언어장애가 있을
수 있으나, 지능은 비장애인과 차이가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④ 정답 : ② X

▶ **해설 :** 청각장애인은 모두 수화로만 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모양을 통해서 혹은 보
청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⑤ 정답 : ② X

▶ **해설 :** 휠체어를 사용하더라도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편의시설의 발달로 출장
이 잦은 일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6 정답 : ② X

▶ **해설 :** 인지적인 능력이 낮더라도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지적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함부로 반말을 하는 등의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7 정답 : ② X

▶ **해설 :** 상대의 의사를 모르고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알아듣지 못하였을 때는 다시 한 번 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정답 : ② X

▶ **해설 :**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비전문가로 호칭하듯이 어떤 특성을 지닌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할 때는 그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임을 나타내면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비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9 정답 : ② X

▶ **해설 :** 안경 쓴 사람에게 안경 쓰는 것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듯이,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닌 그 사람을 이루는 하나의 특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라식 수술로 안경을 벗을 수 있는 것처럼 의학기술의 발달로 장애가 치유될 수는 있어도,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 ● 장애를 가진 위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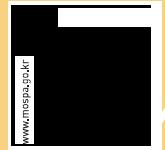
프랭클린 루스벨트

(Franklin D. Roosevelt, 1882~1945)
미국 32대 대통령 / 지체장애인

루스벨트는 1920년에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되었으나 낙선하였다. 그로부터 1년 후인 1932년 소아마비에 걸려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주위 사람들은 그의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상태가 호전되자 정계에 복귀했고, 그 후 4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32년 그가 미국 제32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전 세계는 대공황이라는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는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한편, 유효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뉴딜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치적에 힘입어 그는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으로 기록되어 있다.

II. 퀴즈! 퀴즈!





장애인 공무원 근무사례

III





장애인 공무원 근무사례



●● 주 혜 준 연구사

- 소속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공학과
- 장애유형 : 지체 1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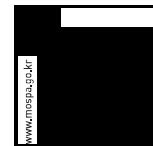
저는 선천성 1급 지체장애인이지만 특수학교를 다니지 않고 일반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상황에서도 엘리베이터나 벽, 계단의 난간 등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생활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난간이 없는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식사할 때 국그릇을 옮기는 것처럼 도저히 혼자 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난간이 없는 계단의 경우, 대부분 처음에 잘 모르고 제 팔 전체를 잡고 부축을 해주시려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의 경우에는 이것이 도리어 몸의 중심을 잡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노력해도 정말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도와달라고 말씀드린 덕분에 지금은 어느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지를 미리 아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큰 불편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특별하게 인식하기 보다 하나의 인격체 자체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배려해 주심에 감사할 때가 많지만 진정한 배려는 눈치채지 못하게 티 안 나게 배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Ⅲ. 장애인 공무원 근무사례





○○ 이 종 승 주무관

- 소속 : 조달청 물품관리과
- 장애유형 : 지체 1급



조달청은 정부대전청사 내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지만 훨체어 장애인이다 보니 엘리베이터와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는 다소 불편함을 느낍니다. 사무실이 4층에 있어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비장애인 공무원들의 배려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도 1층에 2개(1개는 검색대 밖에 설치), 지하에 1개가 있는데 출입문이 고장이라도 나면 당황스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체 1급 장애인에 대해 직장 내에서 “일은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선입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일하는 능력은 장애와는 상관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회식 등을 위한 모임에서는 훨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하여 훨체어가 들어가기 쉬운 곳으로 장소를 정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 오상훈 조사관

- 소속 : 서울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
- 장애유형 : 청각 2급



청각장애인이라 전화응대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동료, 상사분께서 대신 받아 주시기도 하고, 회의나 대화할 때도 못 알아 들었을 경우에는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말씀해 주셔서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메신저로 지시내용을 전달해 주시기도 하고 제 자리로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전화응대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저희 기관에서 보조공학기기(전화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방향으로 개조가 되었고, 그 결과 예전보다는 통화를 잘할 수 있게 되어 업무 능률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



○○ 한 원 민 주무관

- 소속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 장애유형 : 시각 1급



제가 가까이에서도 사람을 잘 못 알아 보는데 사정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인사성이 없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근무 초기에 비하면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저를 먼저 알아봐 주십니다. 저는 장애인 스스로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공무원 중 그만둔 사례가 있는데 업무보다는 조직에 적응을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큰 원인 같습니다.

대부분 장애인이 먼저 손을 내밀기가 어렵습니다. 주위 동료 공무원이 먼저 손을 내밀어 관심을 가져주고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처럼 멀쩡하게 보이는 장애인에게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노 승 방 주무관

- 소속 : 보건복지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 장애유형 : 뇌병변 3급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10년 전만 해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는데 최근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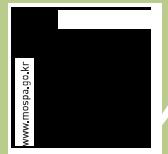
개인적으로는 장애인지만 조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동료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다면 각종 보조공학기기의 활용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좌측 편마비로 인해 일처리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한손 키보드가 있으면 업무처리가 한층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으나 장애인 공무원 스스로도 원만한 공직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헬스클럽을 다니며 재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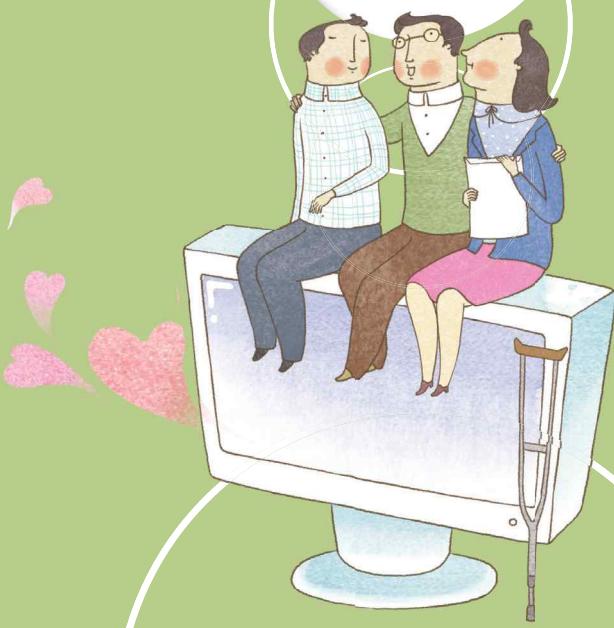
또한, 부처의 어떤 업무가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책자 발간이 신규 채용될 공무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동료와
함께 하기

III





장애인 동료와 함께 하기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유형별로는 장애의 특징에 따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종류별로는 15가지로 구분하며, 경우에 따라서 1, 2급 또는 2가지 이상의 중복장애를 가진 경우에 해당하는 장애를 중증장애로, 그 이하 장애에 대하여는 경증장애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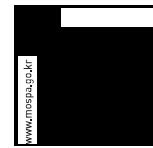
2012년 말 현재 251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4.93%입니다. 즉 인구 100명당 5명 정도가 장애인입니다.

그 중 중앙행정기관에 고용된 장애인 공무원은 4,805명(3.27%)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은 8,306명(3.82%)입니다.

| 구 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 총인구(천명) | 48,992 | 49,269 | 49,773 | 49,986 | 50,734 | 50,948 |
| 등록장애인 수(천명) | 2,105 | 2,246 | 2,429 | 2,517 | 2,519 | 2,511 |
| 장애인 고용현황 (명) | 중앙행정기관 | 3,488 | 3,774 | 4,037 | 4,479 | 4,665 |
| | 시·도 | 5,793 | 6,553 | 7,581 | 7,859 | 8,128 |
| | 민간 | 76,404 | 83,765 | 91,665 | 98,238 | 103,026 |

III. 장애인 동료와 함께 하기





○○ 1. 장애유형 알아보기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며, 장애유형은 전체 15가지입니다.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 |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 | 청각장애 | 청각장애, 평형기능장애 |
|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증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
|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
| | | 간질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질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 |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장애 |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정신분열증,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 2. 장애유형별 특성 이해하기

1) 신체적 장애(외부장애)

① 지체장애

지체장애는 흔히 체간(몸통), 사지와 하지에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하며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로 구분됩니다.

절단장애는 신체의 일부분이 절단된 상태를 말하며, 관절장애는 관절염, 관절손상 등 관절 자체의 병변이나 관절 주변의 병변에 의해 발생한 장애이며, 지체기능장애는 상지 또는 하지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변형 및 단축은 한쪽 다리가 짧거나 척추가 흰 장애입니다.

②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는 뇌성마비, 뇌출증,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상지와 하지의 마비가 나타나 주로 보행장애와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적 장애 외에 언어장애, 시각장애 등의 장애가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③ 시각장애

시각장애는 빛이 눈으로 들어와 뇌까지 전달되는 과정 중 어느 부위가 손상되어 시력을 잃거나 시야가 결손된 것을 말합니다.

전체 시각장애인 중 전혀 볼 수 없는 장애인은 소수이며 대부분은 명암이나 물체의 형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④ 청각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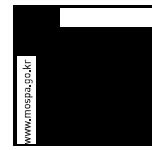
청각장애는 귀를 통하여 들어온 소리를 감지하여 뇌에 전달하는 경로에 손상이 있어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거나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평형기능의 이상이 있는 경우도 청각장애에 포함됩니다.

⑤ 언어장애

언어장애는 의사소통을 위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음성을 통하여 표현하는 과정 중 어떤 부분의 이상으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장애입니다. 언어장애는 단순한

III. 장애인 동료와 함께 하기





조음(발음)장애, 유창성장애(말더듬)와 같은 음성장애 그리고 언어증추손상으로 인한 실어증. 발달기에 나타나는 발달성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⑥ 안면장애

안면장애는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노출된 안면부에 면상반흔, 색소침착,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 등이 남아있는 장애를 말합니다. 노출된 안면부란 상자와 하지, 몸통 이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안면장애는 모세혈관기형, 혈관종, 신경섬유증증과 같은 질병이나 화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습니다.

2) 신체적 장애(내부장애)

⑦ 신장장애

신장장애는 혈액 내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을 만드는 신장기능에 이상이 생긴 장애입니다.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는 경우 그리고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신장장애에 포함됩니다.

⑧ 심장장애

심장장애는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어 심부전증 또는 협심증 등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장애를 뜻하며, 심장이식을 받은 경우도 심장장애에 포함됩니다.

심장장애는 흔히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고혈압증, 심막염 등의 심장질환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⑨ 간장애

간장애는 간경변, 간암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최초 진단 이후 1년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간을 이식받은 경우도 간장애에 포함됩니다.



⑩ 호흡기장애

호흡기장애는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입니다.

만성적인 호흡기능 부진이 있는 환자로 진단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고 2개월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호흡기장애인으로 정의됩니다.

⑪ 장루 · 요루장애

장루 · 요루장애는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입니다.

- **장루** : 대장 또는 직장암 절제술 후 대변을 항문으로 배설시킬 수 없을 때 대변이 장에서 관을 통하여 복부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통로
- **요루** : 방광절제술 등으로 소변을 요도를 통해 배뇨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소변을 관을 통해 복부 밖으로 내보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통로

⑫ 간질장애

간질장애는 대뇌세포의 과잉방전으로 의식소실, 운동성 활동의 변화 등 여러 종류의 임상증상이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장애를 말합니다.

간질장애는 원인을 뚜렷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소아 간질은 대뇌저산소증, 대뇌외상, 경련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며 성인 간질은 대뇌 뇌손상, 종양, 뇌혈관 장애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정신적 장애

⑬ 지적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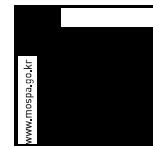
지적장애는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장애를 말합니다.

지적장애는 보통 지능지수(IQ)와 사회성숙도 검사를 통해 판단하는데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를 지적장애로 봅니다.

※ 2007년부터 정신지체장애가 지적장애로 변경되었습니다.

III. 장애인 동료와 함께 하기





⑭ 자폐성장애

자폐성장애는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자폐성장애인은 눈 맞추기를 피하거나 동일함을 유지하려는 특성 등을 대표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 2007년부터 발달장애가 자폐성장애로 변경되었습니다.

⑮ 정신장애

정신장애는 정신분열, 정동장애, 우울장애에 따라 감정조절, 행동, 사고기능 및 능력에 장애가 나타남으로써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3. 장애인과 함께 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

① 공통된 사항

-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동정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상대방과 얼굴만 알고 지내는 관계라면 장애와 관련된 사생활에 대한 대화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인이 사용하는 훌체어, 목발, 기타 보장구들은 개인의 사적인 물건이므로 사용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만져서도 안되며, 사용자가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 장애인과 식사 시 음식점을 선택할 때는 사전협의가 가능한 관계라면 상의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좌식보다는 입식형으로 식탁이나 의자의 배열이 널찍하게 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고 만약 음식점이 크다면 현관에서 멀지 않은 테이블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② 지체장애인과 함께 할 때

- 최근 편의시설의 확대, 재활공학의 발달로 지체장애인의 취업 및 업무 영역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능력보다 사고와 언어능력이 필요한 직무에서는 지체장애 여부가 업무수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손이나 팔에 장애가 있더라도 컴퓨터나 기계를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장애인이 많으며, 다리에 장애가 있더라도 직접 운전을 하는 등 이동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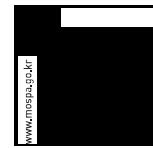


- 면접이나 회의를 준비할 때 접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단이나 턱은 이동하는데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 잡을 수 있는 난간이 있으면 남의 도움없이 계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와줄 때는 옆으로 걸으면서 팔을 뻗어 장애인이 팔을 잡아 의지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장애인이 넘어지는 경우 도움이 필요한지를 묻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 사람을 잡지 말고 팔을 내밀어 필요하면 잡고 일어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미끄러져 다치기 쉬우므로 당사자에게 알려줍니다.
- 장애인이 엘리베이터에 접근하면 장애인의 팔이나 지팡이, 훨체어를 잡아주는 것보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고 문을 닫을 때는 보장구가 문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지체장애인들도 체육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훨체어를 밀어줄 때에는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 것이 좋으며, 전동휠체어는 사용자가 조종하도록 고안되어 있으므로 밀어주는 것이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훨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편안한 위치를 잡은 후 상대방과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훨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앓기 전에 훨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줍니다.

③ 뇌병변장애인과 함께 할 때

- 떨림이나 경직 등 장애상태를 고려하여 직무를 배치할 경우 뇌병변장애인은 대부분의 직종에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무원은 물론 컴퓨터프로그래머 등 전문직으로 진출하는 뇌병변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언어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언어장애가 있다고 지적능력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 뇌병변장애인이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어려울 경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④ 시각장애인과 함께 할 때

- 중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해 준다면 훈장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의 차량지원서비스나 카풀제를 이용한다면 보다 용이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습니다.
- 직무배치 시에는 장애정도(시력 및 시야정도), 점자 사용 여부, 장애 진행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시각장애가 있다고 하여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대독서기 등 보조공학기를 이용한다면 업무영역은 매우 넓습니다.
- 시각장애인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는 문자보다는 들을 수 있는 테이프로 하는 것이 좋으며, 비밀 내용은 전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동시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할 때는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방향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필요시 주변 위험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 지팡이는 안내견과 마찬가지로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재활용구입니다. 지팡이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과 함께 이동을 할 때는 지팡이의 반대편에 서서 당신의 팔을 내어주면 도움이 됩니다.

⑤ 청각장애인과 함께 할 때

- 화상전화기, 소리증폭장치, 핸드폰 문자서비스 등 최근에는 언어 대신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대체수단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어 청각장애인은 대부분의 직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청각장애인들은 수화를 많이 사용하지만, 메모나 입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청기를 이용하여 말하거나 들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청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당황할 수 있지만, 차근차근 몸이나 글을 통해 대화할 수 있습니다. 과장된 얼굴표정과 몸동작을 보일 필요는 없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몇 마디 말을 하여 여전히 경청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 청각장애인은 입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듣고, 함부로 추측해서는 안됩니다.

- 청각장애인들에게 몸짓 및 얼굴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색안경, 모자는 전체 얼굴 특히 눈을 가릴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⑥ 언어장애인과 함께 할 때

- 언어장애인의 대화 속도는 비장애인만큼 빠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할 때 얼굴, 눈을 바라보고 대화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 언어장애인 중 전화통화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팩스, 이메일, 메신저 등 다른 의사소통방법을 활용합니다.
- 언어장애인이 천천히 오랫동안 이야기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는 등 자신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언어장애인이 말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더라도 당사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끝마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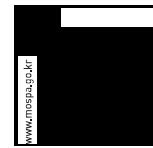
⑦ 안면장애인과 함께 할 때

- 화상으로 장애를 입은 안면장애인의 경우 주변의 시선이 불편해서 한여름에도 긴 상의를 입거나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리하게 모자나 장갑 등을 벗게 하는 행동은 삼갑니다.
- 화상으로 장애를 입은 안면장애인의 경우 습도나 온도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냉방이 잘 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 술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흉터를 더 불게 만들고 흉터에 색소침착이 남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술은 무리하게 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⑧ 신장장애인과 함께 할 때

-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의 경우 투석시간, 투석장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탄력근무제, 재택근무 등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운동이나 장난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힘을 주어 혈액투석을 하는 팔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록 합니다. 복막투석을 하는 복강부분을 잡거나 밀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 복강 : 복막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공간으로 인체에서 가장 큰 빈 공간으로 소화기, 간, 신장, 난소 등이 복강 안에 들어 있습니다.

- 신장장애인은 식사조절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식사할 때 염분을 넣지 않고 따로 준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⑨ 심장장애인과 함께 할 때

- 심장에 무리가 될 수 있는 과격한 운동이나 활동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염분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식할 때 심장장애인의 건강에 무리가 되지 않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심장에 무리를 주므로 술자리에서 술이나 담배를 권하지 않습니다.

⑩ 간장애인과 함께 할 때

- 업무로 인하여 과로나 수면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부의 점막이 누렇게 되는 황달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피하지 말고 장애특성으로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대합니다.
- 술은 금물이므로 회식할 때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 식사조절이 중요하므로 저염식 위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⑪ 호흡기장애인과 함께 할 때

- 건조한 환경이나 자극적인 가스,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는 작업환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쾌적한 근무환경이 중요합니다. 호흡기장애인에게 담배를 권하거나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합니다.
- 이동이 많거나 노동 강도가 높은 직무는 피하여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천명음(쌕쌕거리는 소리)이 날 수 있습니다. 소리가 날 경우 피곤한지 물어보고 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장루 · 요루장애인과 함께 할 때

- 탈의가 잦은 근무환경, 공개적으로 탈의를 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의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장루 · 요루장애인의 경우 팔약근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스가 배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특성으로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식사를 할 때 짙긴 섬유질 음식, 설사 또는 변비, 가스를 유발하는 음식은 피해야 하므로 메뉴를 선택할 때 이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술이나 담배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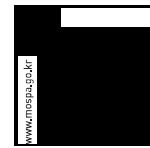
③ 간질장애인과 함께 할 때

-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 수면부족은 발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규칙적인 근무나 야간근무를 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 운전이나 높은 곳, 위험한 기계 앞에서 일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므로 장애상태를 고려하여 직무에 배치합니다.
- 술은 간질발작에 영향을 미치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 발작이 일어나면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안경을 벗겨주며, 넥타이 · 단추 · 허리띠를 풀어주고 기도를 유지해 줍니다.

④ 지적장애인과 함께 할 때

- 인지적인 능력이 낮더라도 자신의 욕구를 알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지적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나이에 맞는 호칭을 사용하고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 지적장애인과 이야기할 때에는 쉬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작업지시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이 해도를 고려하여 합니다.
- 작업은 익숙해질 때까지 시범을 통해 여러 차례 반복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근무시간, 적절한 근무 복장, 직장 규칙 등을 반복하여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⑯ 자폐성장애인과 함께 할 때

- 낯선 장소, 낯선 사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예행연습이 필요합니다.
- 일과를 조정해야 할 경우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돈을 계산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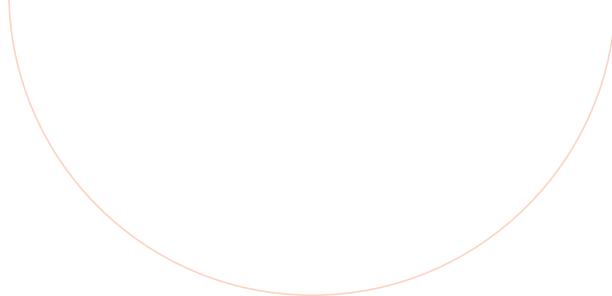
⑰ 정신장애인과 함께 할 때

- 근무 중에도 자연스럽게 약을 복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중간 중간 짧은 휴식이 도움이 됩니다.
- 정신과 약이 길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식음료의 반입이 금지되는 경우라도 정신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해 줍니다.
- 약물복용이나 치료를 위해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4. 바른 표현 알아보기

우리나라 속담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란 말이 있죠? 상대에 대한 존중은 바른 용어 사용에서 시작합니다. 장애 관련 바른 표현을 알아봅시다.

| 부적절한 표현 | 바른 표현 | 관련 설명 |
|---------------------|-------------------------------|---------------------------------------|
| 장애인자, 지체부자유자, 불구자 | 장애인 (※장애인이라는 표현은 법적용어가 아님) | 비하의 의미가 없고 공식용어인 장애인으로 통일하여 사용 권장 |
| 정상인 | 비장애인 | 정상인이라 장애인이 '비정상인'이란 의미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용어 |
| 앉은뱅이, 절름발이 | 하지지체(하반신) 장애인 | 비하의 의미가 포함된 표현 지양 |
| 난쟁이 | 성장장애인 | 비하의 의미가 포함된 표현 지양 |
| 소경, 장님, 봉사, 외눈박이 | 시각장애인 | 비하의 의미가 포함된 표현 지양 |
| 벙어리 | 언어장애인 | 비하의 의미가 포함된 표현 지양 |
| 귀머거리 | 청각장애인 | 비하의 의미가 포함된 표현 지양 |
| 백치, 정신박약아, 정박아, 저능아 | 정신장애인 | 비하의 의미가 포함된 표현 지양 |
| 곱추, 곱사등이 | 척추장애인, 척추후만증 환자 | 비하의 의미가 포함된 표현 지양 |
| 문둥이 | 한센인 | 비하의 의미가 포함된 표현 지양 |



● ● 장애를 가진 위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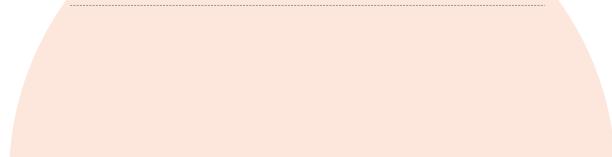
스티븐 호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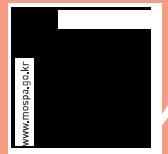
(Stephen W. Hawking, 1942~)

영국 물리학자 / 지체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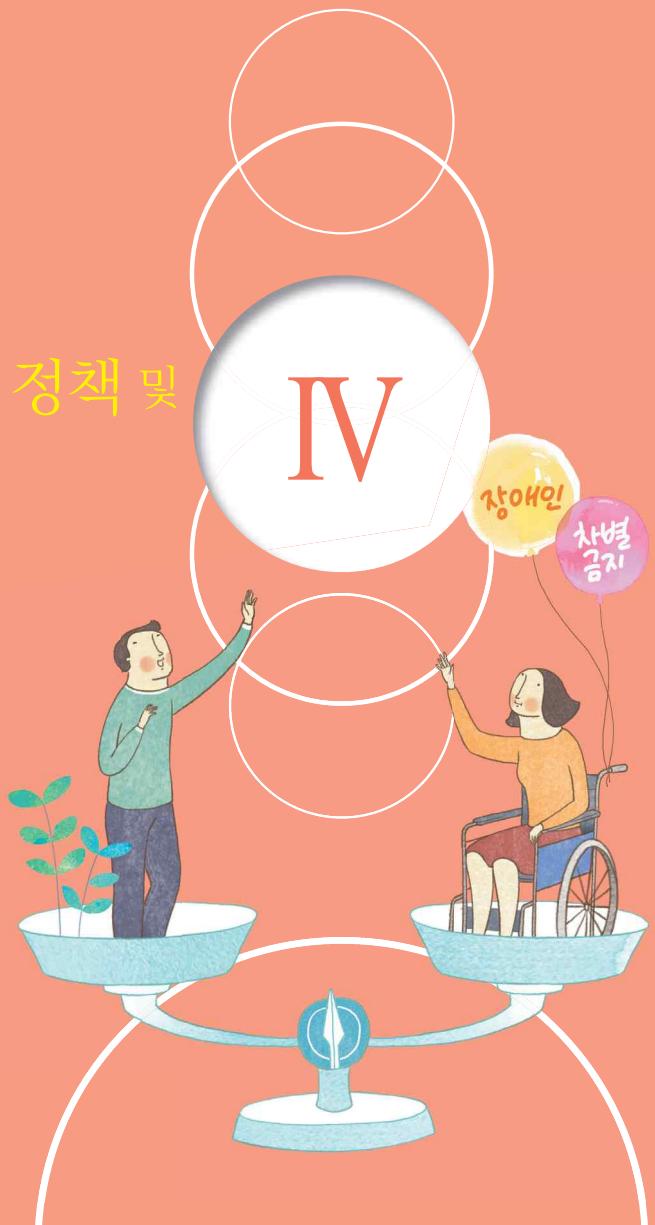
스티븐 호킹은 1962년 옥스퍼드대학을 졸업하고 캠브리지 대학원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다. 이즈음 그는 온몸이 굳어가면서 운동신경이 파괴되어 전신이 뒤틀리는 퇴행성 신경근육질환인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일명 루게릭병)'에 걸려 병원에서 1~2년 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 후에도 그는 홀체어에 의지한 채 물리학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않았으며, '특이점 정리', '블랙홀 증발', '양자 우주론' 등 현대 물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을 발표하게 된다. 이런 업적을 높게 평가받아 그는 갈릴레이, 뉴턴, 아인슈타인의 계보를 잇는 물리학자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정책 및 사례 알아보기





장애인 차별금지 정책 및 사례 알아보기



OO 1. 장애인 차별금지 정책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정부에서는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1) 차별유형

차별유형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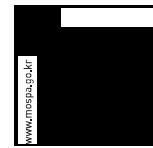
첫째, 직접차별입니다.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을 통해 불리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간접차별입니다.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입니다.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이유없이 편의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넷째, 광고에 의한 차별입니다.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2) 차별금지 대상

장애인 본인,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보호자 또는 후견인을 말합니다),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3) 차별금지 주요내용

첫째, 「고용」에서의 차별금지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모집·채용·임금·승진·정년·퇴직 등)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에서의 차별금지입니다. 장애인의 입학·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입니다. 장애인이 토지·건물 매매와 임대, 금전대출 및 신용카드의 발급 등 재화와 서비스 이용 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면 안됩니다. 장애인이나 보조견 등이 시설물과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거부하거나 추가비용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차별금지입니다. 공공기관 등은 제작·배포하는 전자정보(웹사이트 등) 및 비전자정보(간행물 등)의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행사 를 주관·주최하는 경우 7일 전 장애인의 요청이 있다면 수화통역 등 편의를 지원해야 합니다. 방송사업자는 폐쇄자막, 수화방송,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째, 「문화·예술·체육활동」에서의 차별금지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보조견의 문화·예술·체육시설 이용 및 참여를 제한·거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지방자 치단체,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시설정비, 비치용품 구비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섯째,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에서의 차별금지입니다.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행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허가·신고·인가의 절차와 공공사업의 실시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



리 · 거부하면 안 됩니다. 또한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 참정권 보장을 위해 시설 및 보조기구의 개발, 선거 정보 전달 등을 해야 합니다.

일곱째, 「모 · 부성권, 성」 등에서의 차별금지입니다. 누구든지 임신 · 출산 · 양육 · 입양 등 모 · 부성권의 행사를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장애인에게 자신의 성을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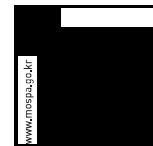
여덟째, 「가족 · 가정 · 복지시설, 건강권」 등에서의 차별금지입니다. 가족 · 가정 · 복지시설은 교육권 · 재산권의 행사 등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의 진료거부 등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은 폭력, 괴롭힘, 모욕, 학대, 추행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아홉째, 「장애인 여성 · 장애아동 ·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장애여성, 장애아동에 대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지적,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을 부당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아동의 성별, 유형 등을 고려한 지원 및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 홍보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4) 권리구제

행정기관(국가인권위원회 진상 · 직권조사, 법무부 시정명령)이나 사법기관(민사 · 형사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 2.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당한 편의의 기준

1) 모집 · 채용

모집자료, 채용광고 등은 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하게 합니다. 지원서와 기타양식은 장애인이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해야 하며, 모집 장소는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2) 채용이후

첫째, 사업장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주출입구와 이동통로에는 높이 차이가 없어 훨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출입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건물 내에서 회의실, 식당 등의 공간에 접근하거나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턱 낮추기,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의 필요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화장실은 장애인 근로자가 이용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둘째, 의사소통 및 업무수행이 원활하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 특성과 유형을 고려하여 장애인 근로자가 비장애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작업지침서 및 작업지시서를 제공합니다. 정보접근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화면낭독 · 확대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독서기 등 장애인 보조기구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유형을 고려하여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의 시설이나 기계, 장비를 설치 또는 개조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 · 훈련을 실시합니다.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에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합니다. 장애의 유형을 고려하여 교재(점자자료 등)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낭독자 및 수화통역사와 같은 보조인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높낮이 조절용 책상, 화면 확대프로그램 등 교육에 필요한 보조수단을 제공합니다. 교육 · 훈련을 외부업체에 위탁할 경우에도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넷째, 시험 및 평가를 위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시험 및 평가를 위하여 적절한 보조수단이나 보조인력을 제공합니다. 장애의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시험 및 평가시간을 연장합니다.



다섯째, 직무나 정책의 조정을 통해 편의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하여 작업일정, 근로시간을 변경합니다.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장 방침을 융통적으로 운영합니다.

●● 3.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1)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차별

지체장애 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양손이 불편하여 기술고시 2차 논술형 답안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필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유형(지체, 뇌병변 등)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위배되므로 향후 해당 장애유형의 장애인 수험생에게 시간연장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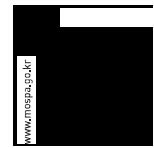
2) 우체국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00사업본부장에게, 확대경을 미비치한 6개 우편취급국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을 즉시 비치하도록 하고, 전국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확대경 비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치되지 않은 곳에는 조속히 확대경을 비치하도록 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3) 하나뿐인 장애인 대형면허 시험장 운영으로 인한 장애인 차별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은 장애인들의 1종 대형·특수면허 시험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전국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중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한 곳만을 장애인 1종 대형·특수면허 기능시험장으로 지정·운영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 운전면허 응시자들이 서울까지 와야 하는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유발시키는 등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바,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장소를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한 곳에만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 및 제19조 제7항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에게 전국의 총 26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우선적으로 주요거점이 되는 시험장에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4) 불리한 징병검사 기준으로 인한 장애인 인권침해

중증 시각장애인에 대해 비장애인들과 같은 장소 및 절차로 심리검사, 신장·체중 측정, 시력 측정 등 징병검사를 받게 하고, 징병검사 시 지방에 거주하는 중증 시각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제공 없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위들은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중증 시각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의 2 별표2를 개정할 것과 병무청장에게, 중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들과 분리된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서울로 상경하여 정밀징병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경우 이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5) 지적장애인 구속수사 과정에서의 차별

‘촛불 1주년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여 경찰에게 박카스병을 던진 사유로 체포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에 대해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보호자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여 조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서장과 경찰청장에게, 장애인의 수사 및 심문에 있어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에 규정된 보호자 등의 조력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장애를 가진 위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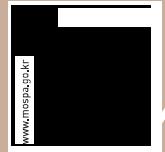
이상목

(1962~)
서울대 교수 / 지체장애인

이상목 교수는 1985년 서울대학교 해양지질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IT 박사학위 취득 후, 영국 더램대학교 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2003년 12월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로 임용되어 기초과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학문에 대한 열정과 도전정신을 불어넣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던 중, 2006년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차량사고로 목 아랫부분을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를 입었다.

그러나 그는 사고 후 6개월 만에 강단에 복귀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등 놀라운 의지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 비추어 그는 한국의 '스티븐 호킹'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는 현재 교수로서, 학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재활을 돋는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정책

V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정책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1990년 장애인고용제(의무고용률 2%)가 처음 도입되었고, 2000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법제화되었습니다. 2009년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3%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는 공안직(교정, 보호,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공안), 검사, 경찰, 소방, 군인, 경호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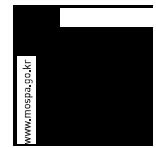
2) 장애인 구분모집 제도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공직진출 지원정책은 1989년 9급 공채 시험에 장애인 구분모집 제도를 도입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1996년에는 7급까지 확대 · 적용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7 · 9급 구분모집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6.5%인 225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3) 중증장애인 일괄 경력경쟁채용제도

정부는 장애인 구분모집 제도를 통해서도 공직진출이 쉽지 않은 중증장애인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해 2008년 「중증장애인 일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도입하였습니다. 첫해인 2008년에는 18명을 선발하였으며, 2013년에는 28명까지 선발인원을 확대하여 지금까지 총 129명을 선발하였습니다.





4)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등

장애인 수험생이 비장애인 수험생과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7·9급 공채시험 등에서 장애유형별로 확대 문제지, 확대 답안지, 보조공학기기 등 편의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애유형·등급별로 시험시간을 최대 1.7배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하여 장애인 공직 설명회를 2008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는 등 장애인의 공직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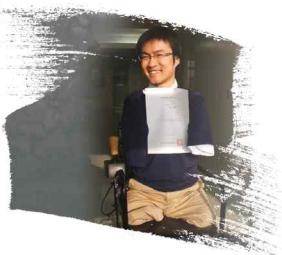
장애인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는 이동성, 정기적 치료기관,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희망근무지를 실시하며, 근무소재지를 다른 시·도로 배치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로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보조인, 보조공학기기 및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식 전환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 및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가진 위인들



오도다케 히로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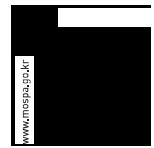
(1976~)

일본 사회운동가 / 지체장애인

태어나면서부터 팔다리가 없었고 성장하면서 10센티미터 남짓 자라났다. 그러나 달리기, 야구, 농구, 수영 등을 즐기며 초, 중, 고등학교를 마치고 일본의 명문대학인 와세다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였다.

그는 자신의 장애를 단순한 '신체적 특징'이라고 주장한다.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팔다리가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마음의 장벽 허물기(Barrier Free)' 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솔직하고 위트있게 담은 「오체불만족」은 일본에서 최단기간에 300만부 돌파라는 기록을 세운 베스트셀러로 기록됐으며, 지금도 독자들로부터 꾸준한 인기와 관심을 받고 있다.



참고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 함께 생각해보기, 2008.
 2.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삶과 사회적 인식, 2013.
 3. 안전행정부,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2012.
 4.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홍보용 자료, 2010.
 5.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장애인동료와
함께 일하기

| | |
|----------|--------------------------------|
| 발행일 | 2014. 1 |
| 발행처 | 안전행정부 |
| 기획제작 | 인사실 균형인사정보과(02-751-1674, 1678) |
| 디자인 · 인쇄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